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<목 차>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고용노동부	작 성 자	이름	정구봉
	담당부서 (과)	산재보상정책과		직급	7급
	국장 ^代	김규석		연락처	044-202-8838
	과장	오태웅		이 메 일	050006033@mail.go.kr

2021. 09. 23. 작성

정 책 책 임 자 직 위

성 명 (서 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								
	2.규제조문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								
	3.위임법령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		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1.09.27 ~ 2021.11.08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“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”을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(64-5)로,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업무상 재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특고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. - 현재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 등 15개 직종에 대해 이미 산재보험 적용 중이며, ‘21.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을 신규 적용*하는 등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*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심사 완료 ○ 동 개정안은 연구용역, 실태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화물차주*를 산재보험법상 특고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. * 유통배송기사 10만명, 택배 지·간선 기사 1.5만명, 카캐리어 2천명, 곡물 1천명 등 총 11.8만명								
	7.규제내용	○ 산업재해보험법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가 적용되는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-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그 산재보험료의 50%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발생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</td><td>특고 화물차주 11.8만명의 사업주</td></tr></table>		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	피규제자	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	특고 화물차주 11.8만명의 사업주
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							
	피규제자	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	특고 화물차주 11.8만명의 사업주							
9.도입목표 및 기대효과	○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(약 11.8만명)를 특고 범위에 추가하여 산재보험 적용,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비용편익분석 (단위:백만원)		비용	편익	순비용					
		피규제자	72,638.65		72,638.65					
		피규제자 이외		442,199.46	-442,199.46					
		정성분석								
		주요내용	○ 산재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하다 다친							

			경우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-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뿐만 아니라,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,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보상연금,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, 장례비 등이 지급되어 - 취약노동자들을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○또한, 산재보험은 재활치료, 직업재활훈련 등 직장 복귀를 지원해 주므로 노동자의 빠르고 건강한 일터복귀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 함		
	11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중기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	해당없음
기타	12.일물설정 여부	해당없음			
	13.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없음			
	14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		적용	72,638.65	0	9,179.98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·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)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</u>	5. <u>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·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)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가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</u> <u>나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배사업에서 수송 업무를 하는 사람</u>
6. ~ 12. (생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u>가. ~ 라. (생략)</u>	1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u>

현 행	개 정 안
	<u>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및 주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또는 같은 업종(음식점업 및 주점업을 말한다)의 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자의 식자재, 식품 등을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에 배송하는 사람</u> <u>다.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식자재, 식품 등을 기관 구내식당에 배송하는 사람</u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<“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”을 위한 국정과제(64-5)>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“특고”)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

* 특고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, 기본급여도 보장되지 않는 등 소득이 불안정하여 근로자보다도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

-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회안전망은 산재보험이 유일 → 산재보험 적용은 특고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

* 산재보험에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

- 특고를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내로 포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*

* 노사정위('02.5), 권익위('12.12), 인권위('15.1)

- 이에 '08년부터 일부 특고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 중이나,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여전히 제한적

* (전체 특고) 40여개 직종, 166~221만명 ↔ (산재보험 적용 특고) 15개 직종, 70만명

< 참고: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논의 경과 >

- '02.5.6 노사정위원회는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「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」에 대하여 산재보험적용방안을 강구”하기로 합의
- '06.10.2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침을 **확정 발표** ⇒ 골프장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학습지방문교사,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4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직종별로 확대하는 방향에 합의
- * 직종별 확대 경과: ('08)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레미콘기사 → ('12)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 → ('16)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대리운전기사 → ('19) 건설기계조종사 → ('20)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기사, 방문교사 → ('21) 소프트웨어프리랜서

○ 이에 現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「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」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

- '17년부터 우선 적용 검토 분야에 대한 단계적 연구용역을 거쳐 분야별 확대 적용 추진 중

【분야별 적용확대 추진현황】

우선 적용 검토 분야	연구용역	시행령 개정	적용
■ 건설기계	'17년	'18년	'19.1.1~
■ 방문서비스, 화물운송	'18년	'19년	'20.7.1~
■ IT 업종	'19년	'20년	'21.7.1~
■ 유통물류 화물차주, 택배 지·간선기사	'21년	'21년(안)	'22.7.1.~(안)

- '19.1월부터 27개 전체 건설기계 기사*를, '20.7월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** 및 화물차주(4개 품목), '21.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*** 까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음

* (기존) 레미콘기사만 적용 ↔ (개선) 덤프트럭, 굴삭기, 지게차 등 27개 건설기계기사 적용

**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방문강사, 가전제품설치기사

***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종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

- 금년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택배기사 및 화물차주와 노무 제공 형태가 유사함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마트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지정하여 산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○ 규제대안의 내용

현행유지안	대안명	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유지
	내용	현행 15개 직종으로 유지
규제대안1	대안명	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
	내용	① 유통배송기사(마트배송기사 등) 특고 신규 지정 *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(약 10만명)

		② 택배 지·간선기사 특고 신규 지정 *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사람 (약 1.5만명) ③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신규 지정 * 자동차(카캐리어) 또는 곡물(밀가루, 사료 등)을 운반하는 화물차주(약 3천명)
규제대안2	대안명	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일부 확대
	내용	규제대안1 적용확대 대상 중 일부만 신규 특고로 지정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현행유지안	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의무 미발생	- 화물차주 등 특고종사자 11.8만명 산재위험에 노출 -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5개 직종 특고와의 형평성 문제 국정과제 이행 차질
규제대안1	- 화물차주 약 11.8만명에게 산재위험으로부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제공 - 업무상 재해를 입은 화물차주 대상 신속한 진단·치료 및 적절한 재활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 지원	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50% 납부 의무 발생
규제대안2	일부 화물차주 직종에게 산재위험으로부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제공	- 추가 적용직종외 화물차주는 산재위험에 노출 -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5개 직종 특고와의 형평성 문제 국정과제 이행 차질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화물차주	- 노무제공 특성 상 업무상 재해(특히 업무상 질병*)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 → 산재보험 희망의사가 높음 -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보상 문제 해결 필요	- 마트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- 보조사업장 문제는 전속성기준 폐지등 법개정 필요

화물업계 등 사업주	○ 화물차주의 산재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나,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 - 산재보험 적용대상 불분명 문제 해소 필요	○ 산재보험료 50%감면 등 보험료 경감조치 병행 - 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고시 마련 검토
---------------	---	--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특고를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내로 포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*되어 있을뿐 만 아니라

* 노사정위('02.5), 권익위('12.12), 인권위('15.1)

- 現 정부 국정과제로도 반영되어 있어 특고 범위를 현행 15개 직종으로 유지하는 대안 또는 소극적 범위 확대는 선택 불가

- 특고 확대 대상 직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

- 지난 수 년 간의 연구용역* 등을 토대로 '22년 특고 확대 우선 검토 분야를 마트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로 선정하였으며

* ('19) 건설기계종사자 → ('20) 방문서비스 종사자, 화물차주 → ('21) IT분야 프리랜서 → ('22) 화물차주

◇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그간의 연구용역

- 특고 노무제공 실태를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('13, 고려대)
- 특고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('14,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)
- 비전속적 특고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('15, 국제노동법연구원)
- 특고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('17, 노동연구원)
-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('18, 노동연구원)
-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방안 연구('19, 노동연구원)
-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직종별 노무제공 실태조사 및 적용방안 마련('21, 노동연구원)

- 노동부-근로복지공단 공동으로 직종별 근로실태, 노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담의사 등 확인 등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직종을 선정

* 종사자 FGI, 사업주 단체, 개별 사업자 간담회 등 총 27회)

- 한편,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

- 현재 실시 중인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를 통해 보험료 50%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며,
 - 아울러 직종별 소득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재보험료 또한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
- 결론적으로, 동 대안 선택 시의 비용-편익을 비교하였을 때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,
- 특고에 대한 기본적 사회안전망 제공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특고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

3. 규제목표

- ①마트배송기사 등 유통배송기사, ②택배 지·간선기사, ③자동차·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화물차주 11.8만명을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지정, 산재보험 적용
- 업무상 재해를 입은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단·치료 및 적절한 재활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 지원

--- 【참 고】 -----

○ 확대 직종별 상세 설명

- ① (유통배송기사)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, 종사자 규모는 약 10만명*

* ① 물류센터에서 점포(대형마트, 편의점, 기업형 슈퍼마켓 등)로 일반상품 배송, ② 물류센터에서 음식점(체인점, 구내식당 등)으로 식자재 배송, ③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

- ② (지·간선기사)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⇄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·간선 기사(일반 화물운송 사업자), 종사자 규모는 약 1.5만명

- ③ (특정품목 화물차주)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①자동차(카캐리어) 또는 ②곡물(밀가루·사료 등)을 운반하는 화물차주, 종사자 규모는 약 3천명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마트배송기사, 택배지·간선 기사 등 화물차주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임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

산재보험 보호대상은 전체 화물차주의 20%에 불과하다는 지적

- 또한, 코로나19로 인해 유통물류, 택배업종의 운송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운전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음
-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화물차주의 경우, 산재 발생 시 스스로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임
- 금번 개정안은 산재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특고 중 기존 적용 직종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고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(목적)하기 위해 이들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하여 산재보험에 적용(수단)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해당없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- (독일) “취업자”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“취업자”는 우리나라의 “근로자”보다 넓은 개념으로, 취업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
- (미국)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, 워싱턴주의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형태인 독립계약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 적용
- (오스트리아)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달리하여, 사회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기준을 모든 경제활동 계층으로 폭넓게 규정

○ 타법사례

해당없음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72,638.74백만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 1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72,638.74		72,638.74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442,199.46	-442,199.46
정부				
총 합계		72,638.74	442,199.46	-369,560.72
기업순비용		72,638.74	연간균등순비용	9,179.99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관련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의사 등을 확인한 결과 화물차주의 산재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
- 한편, 특고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 간 절반씩 부담
 - 현행법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나, 현재 「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」에 따라 화물차주를 포함한 6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50% 경감하고 있어 실제 산재보험료로 인한 부담이

과한 수준은 아님

- 아울러, 이번 개정안 화물차주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(고용노동부 고시)는 별도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고, 실소득이 아닌 순소득,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는 등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
- 위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특고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는 '08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,

- 기존 제도의 틀은 전혀 변경되지 않고 적용대상 범위만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, 보험기관(근로복지공단)의 행정상 집행 어려움이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추가적인 재정편성·조정 없이 집행 가능함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연구용역 실시, 연도별 특고 적용확대 분야 선정 ('17~22년)
 - * ('19) 건설기계종사자 → ('20) 방문서비스 종사자, 화물차주 → ('21) SW프리랜서 → ('22) 화물차주 직종 확대
- 화물차주(마트배송기사, 택배 자·간선 기사 포함) 근로실태 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 ('21.상)

2. 향후 평가계획

- (시행일 이전) 특고종사자 및 사업주 대상 제도 안내 등 집중 홍보
 - * 사업장 DM발송, 리플렛 제작·배포 등

- (시행일 이후) 매월 적용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 지속 관리

3. 종합결론

- 상당수 특고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근로자보다 취약한 여건임에도 산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 노출
 - * 일하다 다치는 경우 치료비·생계비 부담으로 생계위협에 직면
- 현행법령상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15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, 상당수 특고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
- 특고 산재 보호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, 現 정부 국정과제로도 반영되어 있음

⇒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(64-5)

- 한편,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
- 결론적으로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,
 - 특고에 대한 기본적 사회안전망 제공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특고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72,638.74		72,638.74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442,199.46	-442,199.46
정부				
총 합계		72,638.74	442,199.46	-369,560.72
기업순비용		72,638.74	연간균등순비용	9,179.99

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

- 산재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
 -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뿐만 아니라,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,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보상연금,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, 장례비 등이 지급되어
 - 취약노동자들을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
- 또한, 산재보험은 재활치료, 직업재활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해 주므로 노동자의 빠르고 건강한 일터복귀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 함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

(정량)세분류	적용 확대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
활동제목	산재보험료 50% 부담
비용항목	기타
비용	72,638,743,371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연간균등
산식	보험료 부과 대상인원×특고 1인당 사업주 부담 보험료 ((59000×105,581)+(59000×50,012))
근거설명	1) 대상인원: 화물차주 약 11.8만명(유통배송기사 10만명, 택배지·간선 기사 1.5만명, 카캐리어 2천명, 곡물 1천명) *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을 통한 추정 대상인원 2) 사업주부담 보험료: ① 운수업: 월보험료(8,798원)×12개월=105,581원, ② 운수부대서비스업: 월보험료(4,168원)×12개월=50,012원 - 월보험료①: 기준보수(1,852,300원*)×보험료율(1.9%**)×사업주 부담 비율 50%***×보험료 경감 50%**** =8,798원 - 월보험료②: 기준보수(1,852,300원*)×보험료율(0.9%**)×사업주 부담 비율 50%***×보험료 경감 50%**** =4,168원 * 신규 확대 직종에 대한 정확한 기준보수는 실태조사를 거쳐 이후 결정되므로 유사직종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) 기준보수 활용 ** 보험료율: 육상 및 수상운수업 보험료율 1.9% / 운수부대서비스업 0.9% → 20년 화물차주 특고 사업장 보험료율 적용 현황 조사 결과 운수업과 운수부대서비스업 적용 사업장 비중이 각각 50% 수준 **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종사자 및 사업주가 50%씩 부담(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) ****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화물차주 등 6개직종 보험료 50% 경감

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☐ 편익

(정량)세분류	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차주
활동제 목	산재보험 혜택
편익항목	보험급여
편익	442,199,460,842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연간균등
산식	$(대상인원 \times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비율 \times 1인당 연간 보험급여) - 1인당 연간 보험료 납부액$ $((118,000 \times 0.031 \times 17,786,942) - ((105,581 \times 59,000) + (50,012 \times 59,000)))$
근거설명	1) (대상인원) 11.8만명 2) (수급자비율) '20년 유사 3개직종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) 특고 산재보험 수급자 비율 3.1% * '20년 유사 3개직종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) 특고 수급자수 1,746명/ 특고 실적용자 54,997명 3) (보험급여) '20년 유사 3개직종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) 특고 1인당 보험급여 17,786,942원 * '20년 유사 3개직종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) 특고 지급 보험급여 총액 31,056백만원/ 특고 수급자수 1,746명 4) (종사자부담 보험료) ① 운수업: 월보험료(8,798원)×12개월=105,581원, ② 운수부대서비스업: 월보험료(4,168원)×12개월=50,012원 - 월보험료①: 기준보수(1,852,300원*)×보험료율(1.9%**)×사업주 부담 비율 50%***×보험료 경감 50%**** = 8,798원 - 월보험료②: 기준보수(1,852,300원*)×보험료율(0.9%**)×사업주 부담 비율 50%***×보험료 경감 50%**** = 4,168원 * 신규 확대 직종에 대한 정확한 기준보수는 실태조사를 거쳐 이후 결정되므로 유사직종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) 기준보수 활용 ** 보험료율: 육상 및 수상운수업 보험료율 1.9% / 운수부대 서비스업 0.9% → 20년 화물차주 특고 사업장 보험료율 적용 현황 조사 결과 운수업과 운수부대서비스업 적용 사업장 비중이 각각 50% 수준

	**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종사자 및 사업주가 50%씩 부담(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) ****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화물차주 등 6개직종 보험료 50% 경감 ※ 산재보험 가입 특고는 보험료의 50%만 부담하고 보험급여의 수혜대상이 되므로 특고종사자 보험료 부담분은 편익에서 제외(특고종사자는 편익 대상에 해당)
--	---

(정성)세분류	산재보험 적용확대 특고 화물차주
활동제목	산재보상혜택
편익항목	보험급여, 재활, 직장복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○ 산재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-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뿐만 아니라,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,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보상연금,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, 장례비 등이 지급되어 - 취약노동자들을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○ 요양급여 :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○ 휴업급여 :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%상당액 ○ 상병보상연금 :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~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○ 장해급여 :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○ 간병급여 :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○ 유족급여 :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○ 장 의 비 :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

	○ 또한, 산재보험은 재활치료, 직업재활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해 주므로 노동자의 빠르고 건강한 일터복귀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 함
--	--